

—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—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약 자 : 구미시장

2. 제한이유

-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잔액의 이자율과 대부료 연체요율을 인하하고
-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방청사 등의 설계시 행정수요·기
구·인력 등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지방청사 표준면적기준을 정함.

3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 대부료·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각각 인하 조정(안 제23조)
 -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잔액(10년 이내) : 5% ⇒ 4%
 -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잔액(5년 이내) : 8% ⇒ 6%
-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농경지외 영리목적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(안 제26조)
-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 차등인하 및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선 설정(안 제31조)
 - 연체이자율

- 1월 미만 : 연 12%	- 1월 이상 3월 미만 : 연 13%
- 3월 이상 6월 미만 : 연 14%	- 6월 이상 : 연 15%
 - 연체료 부과기간 : 납기일로부터 60월
- 청사 등의 설계시 행정수요·기구·인력 등 지역여건에 부합하도록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을 정함(안 제48조)

4. 참고사항

-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(대통령령 제17788호, 2002. 11. 29)
-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(행정자치부, 2003, 1. 8)
- 지방청사 설계 표준면적 산정기준(경상북도지사, 2002, 8. 23)

5. 검토의견

- 행정자치부 준칙을 토대로 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임.
-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대부료, 사용료 등의 이자율을 인하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방청사 등의 설계시 행정수요·기구·인력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표준면적기준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음.